

# 금융거래목적확인서



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오니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확인대상 :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, 미성년자, 여권(또는 여행자증명서)만을 소지한 외국인, 거래중지계좌를 통한 거래를 재개하려는 예금주, 기타 저축은행이 정하는 경우)

금융거래의 목적	
----------	--

☐ 고객확인사항 : 해당되는 [ ]에 “√”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항 목	예	아니오
공 통	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 ☞ 통장/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미성년자 여부와 상관없이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	[ ]	[ ]
	②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상향,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	[ ]	[ ]
법인통장 개설시	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	[ ]	[ ]
여권·여행자 증명서 소지자	① 국내에 주소 및 연락처(전화번호)가 있습니까?	[ ]	[ ]
	② 여권(여행자증명서)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? (본국 신분증, 신용카드, 지로 등 공과금 영수증 등)	[ ]	[ ]
	③ 국내에 직업(개인사업자 포함) 또는 부동산이 있습니까? (채직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자등록증, 등기부등본, 재산세 영수증 등)	[ ]	[ ]
※ 여권·여행자 증명서 소지자의 비대면 거래는 ①과 ②, ③중 하나 이상 충족시 가능합니다.			

본 확인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틀림없이 기재하였습니다.	
20 . . . . . 고객명	(인/서명)

☐ 고객 기재사항에 따라 증빙자료(예 :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예금계좌 개설 동의서 등)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☐ 전화금융사기 이용계좌로 등록된적이 있는 고객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개설목적이 명확하다고 저축은행이 인정한 경우에만 신규 가능합니다.